

변호사법개정안 속 ‘변호사정책협의회’ 문제 많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선임 · 변호사 정책 세우도록 변호사 자율권에 심각한 타격 · 지자체 개입 소지도

법무부에서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변호사법개정안에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발견되고 있어 심한 후유증 발생이 예상된다.

개정안 중에는 특히 법무부에 ‘변호사정책협의회’를 두고 매년 변호사의 현황, 동향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변호사의 직업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변호사에 관한 정책을 법무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고 변협은 그 산하단체로서 의견정도만 제시하라는 취지다.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 산하 협의회에서 변호사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재량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결국 변호사의 운명이 전혀 다른 분야 사람들의 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다.

변협 변호사법개정검토소위원회의 박두환 위원장은 “변호사를 기본적으로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고 마치 의사 일을 요식업회가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며 “법무부 국가,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제의 칼자루를 쥐겠다고 법제화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의 대부분 집행부 임원

들은 변호사회를 아예 법무부에 종속시키고 감시감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차철순 부협회장은 “변호사에 관련된 정책을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하고 변호사가 단지 구성원의 일부로서만 작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원 행정처 등 관련 공무원들은 법무부에 변호사정책협의회가 설립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하면 결국 법무부의 실무 검사들 몇 명에 의해

변호사사회 전체가 조정 통제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변호사는 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직업으로서 특히 권력을 상징하는 검찰과 교도소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기관과 대립 투쟁하는 것이 업무의 본질이기도 하다.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면, 진정 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찰과 대립하여 실제적 진실을 가려내고 무죄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므로

필연적 대립관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 인권변호사는 교도관들의 불법인권유린으로 재소자 한 명이 사망해 교도소 부근에 매장된 걸 발견하고 투쟁을 해서 진실을 밝혀냈다. 변호사의 인권투쟁으로 교도소의 먹방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청송교도소에서 햇빛을 차단한 시설도 그걸 발견한 변호사의 언론에의 기고로 자취를 감추기도 했었다. 변호사만이 발견할 수 있는 인권사각지대가 검찰수사교 교정시설이다. 검찰과 교정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법무부에 1만2000명의 변호사가 종속되어 감시 감독을 받을 경우 변호사의 권력과의 투쟁은 조종을 고향 위험성이 다분하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도 다시 빼앗아가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라는 것이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이다.

법무부의 변호사법개정안을 심사한 법제위원회의 이광수 위원은 “변호사제도의 정책을 연구하는 주체는 변협이어야 하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상”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주체가 되고 그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에서 현실적이고 적절한 변호사정책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엄상의 공보이사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설립인가 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곳이 최종 등록됐다고 16일 밝혔다. 제1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로펌 톱스 앤 그레이, 제2호는 미국 로펌 셰퍼드 멀린, 제3

호는 영국 로펌 클리포드 찬스가 차지했다.

변협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을 접수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히자 세 로펌은 한국 진출 1호 타이틀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호 탄생

16일, 변호 추첨해 톱스 앤 그레이 등 등록

기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설립인가증을 이날 오후 11시에 교부한다고 해 변협은 등록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접수순 등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추첨형식으로 등록번호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추첨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 순서를 정하는 추첨을 먼저 진행했다. 순서 추첨 1위는 톱스 앤 그레이, 2위는 셰퍼드 멀린, 3위는 클리포드 찬스였

다. 이어 본 추첨이 진행됐는데 신기하게도 순서 추첨 순위와 동일했다.

특히 지난 6월 첫 등록된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순위가 동일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1호 외국법자문사는 톱스 앤 그레이의 김용균 변호사, 제2호는 셰퍼드 멀린의 김병수 변호사, 제3호는 영국 로펌 클리포드 찬스의 브라이언 캐시디 변호사다.



변호사 광고, 프리로펌으로!

1. [프리로펌]은 변호사검색 사이트입니다.
2. [프리로펌]은 변호사가 스스로 자신을 광고하는 '열린공간'입니다.
3. [프리로펌]은 무료입니다.



사이트

[프리로펌](http://www.freelawfirm.co.kr)

변호사검색 및 법률정보 사이트, 민사, 형사소송절차, 법률서식 및 상담사례 등 정보 제공.

[www.freelawfirm.co.kr/](http://www.freelawfirm.co.kr) 법, 법률 > 법률정보

통일항아리 기금 탄생



기금 관리할 '통일생각' 발대식

통일부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통일생각)'이 공동 주최한 '통일생각 발대식 겸 통일항아리 토크쇼'가 지난 12일 통일교육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대학생·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통일미래리더캠프 참가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제1부 '통일생각 발대식'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직접 빛은 '통일항아리' 1점을 통일생각(상임대표 문무홍, 공동대표 신영무·신일희·윤장현)에 전달했다.

통일항아리는 과거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조금씩 항아리에 쌀을 넣어두었다가 비상시 활용하는 풍습에서 착안해 구체화한 통일준비의 상징물로, 통일부가 기획한 통일재단 마련 기금의 명칭이기도 하다.

통일생각 공동대표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을 위한 자원 조달보다도 마음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일생각은 통일준비와 통일재원 성금 모금 등을 위해 최근 발족한 민간 단체다.

이어 제2부 통일항아리 토크쇼에서는 류우익 장관과 인기 개그맨 최효종씨가 통일 관련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 전원의 '우리의 소원' 합창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통일항아리에 5월분 월급을 기부하고 강창희 국회의장도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통일항아리 성금 모금이 본격 시작됐다. 통일항아리 캠페인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류 장관을 비롯한 20여명이 약 30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모아진 성금은 통일생각에서 관리하며, 성금 기탁 등 문의는 전화 02-2195-5400로.

변호사 불편사항 개선된다

변협, 대법원에 건의사항 전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일 실무상 불편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번 공문은 지난 2일 있었던 대한변협-대법원 정기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 4가지를 추린 것으로 공탁제도 개선, 법원 열람·등사실 내 휴대용 스캐너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제한하거나 일부 정보를 삭제하고 열람·등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탁규칙에서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힘들어, 공탁을 걸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변협은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나 피해금 공탁은 매우 중요한 양형인자이고, 친고죄의 경우 합의 시 공소기각결정을 하기 때문에 범죄성립요건 판단 요소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재판을 하는 당해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변협은 '형사판결등본 변호인 사전신청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협은 "현재는 형사재판 판결문이 피고인에

게만 발송되고 담당 변호인에게는 발송되지 않는데,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고 항소 여부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변호인으로서,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함으로써 판결이유 설명이나 항소 여부 결정 등에 조력을 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방청석 중 1석을 피해자석(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 피해자 선정)으로 마련해 피해자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석을 정할 경우 다수의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석에 앉지 않은 자가 재판장의 명령없이 무단 진술을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어 재판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원 열람·등사실 내에 휴대용 스캐너 사용 허용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원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법원이 있는데,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할 경우 두꺼운 재판기록을 펼지 않고 등사가 가능하고, 복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손쉽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협은 "등사실 내 스캐너 설치하는 지방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휴대용 스캐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면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 측에서는 비용문제만 해결된다면 스캐너의 설치 및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25時
-247-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 이영욱

상대방 변호사가 우와아~!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오는 사건은 판단해주시죠~ 기록과 자료가 너무 많아~

반대쪽 변호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드릴게요.

재판장도 상대방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갈 것 같아~

공, 두고보자! 흥!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2087-7754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시행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제화·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 하며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법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 처리 과정
- ① 신청 접수(우편·방문)
- ②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 검토
- ③ 심사결과 상임이사회 상정 및 의결
- ④ 신청자 결과 통지(등록증 교부·대한변협신문 공시)

◆ 신청 분야(최대 2개 등록 가능)
-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등록 유효기간: 5년

◆ 등록 신청비: 1개 분야당 100,000원
※ 협회(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0-353899,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등록신청비를 송금하시는 경우, 입금여부를 협회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우편번호: 137-885

◆ 연락처
- 전화 02)2087-7721, 팩스 02)3476-4008
- 이메일 jdchang78@koreanbar.or.kr
- 담당자: 주임 양희창(법제과)

변호사가 사는 법



금태섭 변호사

변호사에 대한 전설(?) 중 하나가 말과 글에 강하다는 것이다. 검찰 측 증인을 날카롭게 추궁해서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고,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기발한 변론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재판을 역전시키는 소설이나 영화를 본 사람들은 현실의 변호사들도 그런 줄로 안다. 물론 완전한 오해다.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스펙 쌓기의 최상층부 출신인 변호사들이 어

한 것처럼 법조인의 글 중에는 잘 안 쓰는 한자 단어, 쉽게 독해하기 어려운 긴 문장으로 점철된 것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감탄이 나오는 아름다운 글도 적지 않다. 한 호흡으로 길게 이어지는 논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같이 가지런한 것을 볼 때면 결론에 동의하던 그렇지 않든 다시 한번 뜻을 새겨보게 된다. 문제는 문장을 난삽하게 쓰는 것이지, 만연체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법률문장 강좌가 개설되고 글 쓰기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법조인들이 쓰는 글이 예전보다 읽기 쉽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예전의 긴 문장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 요즘에 나오는 글들이 너무 짧은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면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도 없지 않다. 한쪽의 주장을 가감 없이 나열한 후 반대편의 논리를 설명하고, 둘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국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은 ○○라는 것으로 돌아가...’라고 결론을 찾아들어가는 리듬감 있는 문장을 보고 싶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박상룡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보면 한 문장이 깨알 같은 글씨로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만 아무도 앞

만연체에 대한 사랑

뿔게 멋진 글을 쓰고 재치 있는 말을 하겠는가. 우리끼리는 모두 아는 얘기지만 변호사들이 쓴 글 중 상당수가 재미가 없고, 나누는 대화도 따분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말씀씨와 글재주는 나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에게 콤플렉스다. ‘어떻게 해서든 주위의 기대를 크게 실망시키지는 말아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전긍긍한다.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면은 그렇다고 쳐도, 어쩌다 외부 매체에 기고라도 해야 할 때는 며칠씩 고민을 하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처방은 간결하게 쓰라는 것이다. 짧은 문장, 두괄식 구성, 누가 읽어도 분명한 의미-그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라는 것이 지상명제였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유일한 답일까.

예전에 선배들이 쓴 서면을 보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적

뒤가 안 맞는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이 소설 것처럼 쓸 수는 없었지만 지나치게 비슷한 문장을 쓰다보면 생각마저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말과 글은 생각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쓰는 문장이 한 종류라면 주장이나 생각도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말과 글에 강할 것이라는 믿음이, 단순히 주장을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을 설득력 있게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의 표현일 것이다. 결론이 옳을 뿐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도 아름다운 그런 문장을 쓰는 변호사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선배들이 애용하던 만연체가 멋지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다.

kts@lawkh.com

사설 변호사의 자율성

변호사는 무엇인가? 돈버는 비즈니스맨인가 권력과 맞서는 투사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변호사법 제1조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라고 했다.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을 보면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물론 법무부는 법률서비스의 선진화와 법률시장 경쟁가속화에 따른 혼탁을 막기 위한 의도이겠으나 변호사단체가 그간 다져온 자율적 징계와 정책집행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대한변협이 다른 외국의 변호사단체와 교류회를 가지거나 IBA 등 국제단체들과 회의할 때마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때마다 굴욕감을 느껴왔다.

세계의 경제중심이 동아시아로 옮겨왔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한·중·일이 국제무대의

중심에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서비스시장도 그렇다. 그러나 중국은 변호사들의 자율권이 없어 국제무대에서 거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의 추세로 보아서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일본변호사법에도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은 없으며 최고재판소가 일본변호사연협회에 사무에 관해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정책을 결정하겠다며 ‘변호사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의도가 어찌되었건 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닐 뿐더러 어떻게 활용할지가 정부 손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이고 그 시대적 역할에 충실해왔다. 박정희 정권의 서슬 퍼런 유신 독재시절에도 맨 먼저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시대가 변했다. 감독과 관리가 능사인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고 본다.

대한변협신문 ©2012 2000년 3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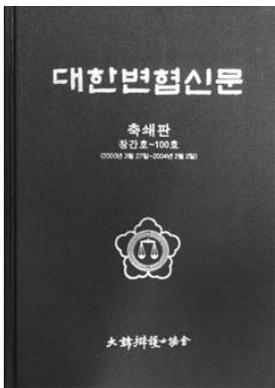
대한변호사협회 발행인 신영무 협회장 편집인 엄상익 공보이사 인쇄인 최낙관

- 대표전화 02) 3476-4000
팩시밀리 02) 3476-2771
기고·기사제보 02) 2087-7752
구독·광고문의 02) 2087-7754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전자우편 news@koreanbar.or.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Table with 4 columns: Category, Sub-category, Phone number, and Fax number.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membership.

대한변협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변협신문 축쇄판 판매(101호-300호)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까지 발간된 대한변협신문을 100호씩 묶어 축쇄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축쇄판에서는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되었던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 칼럼 등은 물론 기사를 통해 협회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내용:
- 2004년 2월 16일자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대한변협신문
- 2008년 1월 1일자부터 2011년 3월 29일까지 대한변협신문
* 단, 1호~100호 축쇄판은 재고량이 부족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가격 / 권 당 30,000원 (* 배송료 별도)

대한변호사협회 홍보과 문의처 전화 2087-7754, E-mail news@koreanbar.or.kr

변협만평

이우정



형사판결등본, 변호인에게도 전달돼야..

수저.

“재협상 통해 별도의 상소절차 마련해야”

변협, ISD 관련 의견서 외교통상부에 제출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서 일부 항목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한미 FTA는 ISD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한미 FTA상의 ISD에 대한 비판이 그 정당성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심사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ICSID 절차 하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상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별도의 상소 절차를 마련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재판정이 선례로서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중재판정간의 최소한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상소 절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어 “재협상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ISD에 따른 위험에의 노출을 줄이는 데에 있다면, FTA에 따라 제소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보다 더 축소해 정부의 정책과 규제조치에 따른 개별적인 유보를 확대하는 방안, 간접수용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현재보다 좁히거나 제한적·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등에 대한 규정만이 있을 뿐 통일 후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변협은 “조세 혜택에 국한해 발생하던 소위 ‘더치 샌드위치’의 문제가 최근에는 FTA/BIT를 대상으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경우에 따라 협약 남용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데 ISD의 판정

레가 서로 구속력이 없는 점, 한미 FTA 제11.28조의 투자, 비체약국의 투자자 및 체약국의 투자자의 정의에 위와 같은 협약 남용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협상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미 FTA 제11.11조 제2항에서는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 부인의 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약상 권리의 남용을 규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정부간 실무협상을 통해 절차, 방법,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조기기 관련 법 제정 서둘러야”

17일, 장애인인권소위 세미나 개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장애인인권소위원회(위원장 박종운 변호사)는 17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보조기기 관련 법·제도 제정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종운 위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장애인 지원과 보조기기 관련 산업 육성, 양측면의 조화를 이루는 법 제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종운 위원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법 제정 및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새롭게 제정될 법은 기존 장애인 관련 법령과 체계적, 내용적으로 정합성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을 동시에 반영하는 국제적 추세와 ISO(국제표준화기구)의 개념을 반영해 ‘보조기기’를 법적용어로 제안했으며, 보조기기 지원과 산업육성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보조기기 지

원 사업은 정부 공공부조 방식과 사회보험 자원 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재정이 미약해 자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전달체계의 통합 운영을 통해 중복지원 또는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효율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수준의 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내의 전담부서 신설, 중앙단위의 중앙보조기지지원센터(가칭) 설치 등이 논의되어야 하고, 장애인 등에게 양질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공학사(가칭)와 같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보조기기의 인증 기준과 검사 기관 등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은 활동보조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신감을 고취시켜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보조기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7일에도 헌법소송과 관련한 전문분야 특별연수가 있었는데 회원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쇄도해 헌법소송아카데미를 구상하게 됐다”며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이공현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긴밀하게 협조해,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강의를 공개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변협, 헌법소송학교 개설한다

재판제도·실무·중요 결정례 등 강의



대한변협이 오는 9월 중에 헌법소송아카데미(가칭)를 개설할 예정이다.

헌법소송아카데미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널리 홍보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매회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들과 협의해 헌법재

판제도 및 실무·주요 결정례 등을 시사성 있는 주제와 연계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협은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헌법재판소와 다각적으로 협조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강의는 9월부터 4개월간 매주 있을 예정이며, 의무연수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헌법소송아카데미의 기획을 맡은 이정원 사업이사는 “7

www.rainbowlaw.or.kr

결혼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온라인법률상담센터

www.rainbowlaw.or.kr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다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국 100여명의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분야별로 상담 해드리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의 법률구조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분야

- 국적법
- 결혼중개업법
- 민사법
- 행정법
- 출입국관리법
- 형사법
- 가사법
- 기타

상담 방법

www.rainbowlaw.or.kr 로 방문

원하는 언어선택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 선택)

공개 상담 혹은 비공개상담으로 상담 글 게재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답변 도착 알림)

변호사 답변 완료

쓴소리 바른소리



엄상의 변호사 · 변협 공보이사

대한변협의 상임이사로 일한 지 일년 반이 넘어가고 있다. 협소한 개인법률사무소의 문제를 넘어 변호사 전체의 문제점을 보게 된다. 변호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여러 번 봤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하루 전이었다. 그 안에 변호사들에 대한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는 걸 발견했다. 형사나 검사는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거처적거릴 때는 언제든지 쫓아버릴 수 있도록 했다. 경찰과 검찰의 실무자들이 막후에서 은밀하게 규정을 만들고 법무부는 대한변협에 의견 한번 묻지 않았다. 사실상 조사 시 변호사의 입회권이 위태롭게 됐다.

조사에 입회하려다 쫓겨난 적이 있다. 송파경찰서에서였다. 담당형사가 피의자와 함께 간 변호사인 나를 보면서 “당신은 공부 잘해서 변호사가 되고 나는 머리가 나빠 형사가 됐지만 이 조사에서 변호사가 입회하면 조서를 나쁘게 써 줄 거야”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수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회를 거절할 게 아니었다. 과거 정보기관에서는 변호사를 하루 종일 기다리게 했다가 잠시 옆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는 조서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변호사의 입회는 진실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옆에 있으면서 엉터리 조서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 서명을 거부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게 핵심

변호사들이 빼앗기는 것

적이다. 입회권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변협 협회장과 임원들이 집단으로 총리실을 찾았다. 국무총리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다.

변협으로서는 이례적인 집단행동이었다. 총리면담부터 거절됐다. 기자실을 찾았었다. 기자들도 시큰둥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인식이 어떤지 경험했다. 심지어 변호사 중에도 입회권을 반기지 않는 의견이 있었다. 냉대받으며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옆에서 하루 종일 생활 필요가 뭐 있느냐는 반응이었다. 돈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은근히 조사 시 입회권이 사라졌으면 하는 눈치도 있었다.

여러 번 조사에 입회를 했던 나는 생각이 달랐다. 조사를 하는 형사나 검사를 통해 정확한 수사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으로 수사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나는 변호비를 일한 시간당 타임차지로 받고 있다. 조사받으면서 함께 고생한 변호사에게 그 돈은 아까워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피의자와 마음이 소통되는 순간은 함께 잠시라도 고통을 겪는 때다. 한밤중 형사와 뒤쪽의 보호실에 함께 있어주면 그 사람들은 은 두고두고 그 정을 잊지 못한다. 마음도 얻고 돈도 생기는 인권을 위한 귀중한 영역이다. 그런 영역을 우리 선배변호사들이 모두 빼앗겨버리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중에서도 요즈음은 일등석과 이등석 그리고 삼등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대형로펌에서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경험도 관심도 없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위한 투쟁에 진심이 담길 리가 없다.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

가 아니다. 그렇게 변호사의 중요한 권리를 빼앗겼다. 한번의 항의방문으로 그들이 빼앗은 권리를 되돌려 줄 리가 없다. 1만2000명의 변호사들은 각자 벌여 먹고 살기 바빠서 어떤 귀중한 걸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변협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협임원이라는 자리도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어찌다 모여 회의를 하는 비상임의 협의체다. 생활비를 버는 것까지 포기하고 변호사 전체를 위한 투쟁에 온 몸과 시간을 바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변호사를 하다 보면 정말 분통 터질 때가 많았다. 민사의 증거로 쓰기 위해 형사기록복사신청을 해도 검찰 직원이 거절한다. 진실이 수사기록 속에 뻗어 있는데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법원은 외면한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닥친다. 개인의 정보보호가 법적정보보다 더 귀중한 것 같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그건 명분에 불과하다. 양형기준에 공약을 하면 감경사유가 된다. 그러나 변호사가 공약을 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탁자체가 불가능하다. 피해보상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왜 더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형사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해 준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절대 그런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 언론이나 당사자들은 판결문도 의뢰인보다 나중에야 얻는 변호사를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한다. 변호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모두들 “어떻게 좀 해봐”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직접 열정적으로 나서는 변호사는 없는 것 같다.

eomsangik @hanmail.net



대구회, 독도 쟁계 주제로 백일장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중기)는 지난 16, 17일 양일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독도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혜를 묻는 백일장을 치렀다. 울릉도에서 치러진 이번 백일장에는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21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1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 <고등부> 장원 상서여자정보고 박보현 차상 대구여고 김주현 차하 대중금속고 정성현 장려상 대구제일고 김경민, 대구중앙고 김효진 <중등부> 장원 대진중 박준우 차상 범물중 도경록 차하 대구경신중 권용욱 장려상 성명여자중 이가영, 매천중 이시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상> 대곡고 김재성 경일여자중 김혜영

동정

● 결혼

▷ 최완규 변호사(서울회 · 78년생) 본인=7월 21일(토), 02)2188-1000

▷ 정순일 변호사(광주회 · 43년생) 장녀 지애=7월 21일(토), 062)222-4626

● 부음

▷ 안영환 변호사(서울회 · 67년생) 부친상=7월 17일(화), 02)595-7121

▷ 김병조 변호사(서울회 · 76년생) 빙부상=7월 17일(화), 02)535-1722

▷ 송재양 변호사(서울회 · 57년생) 모친상=7월 19일(목), 02)3482-0900

▷ 신종열 변호사(서울회 · 59년생) 모친상=7월 19일(목), 02)452-8868

▷ 유영상 변호사(인천회 · 62년생) 빙부상=7월 19일(목), 032)861-1122

▷ 장지수 변호사(서울회 · 66년생) 부친상=7월 19일(목), 02)3703-1114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법률상담과 교육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상담 및 법률 교육 ◀◀◀

◆ 상담대상 : 북한을 벗어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

◆ 교육대상 :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 상담내용 :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일반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상담 (법률구조 포함)

◆ 교육내용 : 민·형사, 노동, 사회보장, 세금 등 일반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률상식 등 교육

■ 문의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대한변협 인권과 전화: (02)2087-7733, 팩스: (02) 3477-4009 E-mail : humanrights@koreanbar.or.kr>

변협 취업정보 사이트 10만명 방문했다



경기중앙회, 불우청소년 후원 행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위철환)는 지난 16일 '제13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개최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어려운 학생들과 이들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결연을 맺은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위철환 회장을 비롯한 경기중앙회 임원진과 결연을 맺은 변호사, 학생과 보호자 및 인솔자 등 약 110명이 참석했으며, 마술공연과 버블쇼 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기중앙회는 2000년부터 변

호사별로 소년·소녀가장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이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3명의 개인회원과 5개 법인회원이 총 67명의 불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총 9억1600만원에 달한다.

경기중앙회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인권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①기간제 변호사 채용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계약직 모집 바로가기'
- ②변호사간 친목도모의 장 '커뮤니티'

기간제 변호사 구인구직란 개설

대한변협이 지난 6월 변호사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개설한 취업정보센터(career.koreanbar.or.kr)의 방문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업 변호사 수가 1만2000명에 못미침에도 방문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졸업생, 외국법자문사 도입 등으로 변호사 인력이 넘쳐나면서 구

직난을 겪고 있는 변호사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정보센터는 변협 취업정보란과 사법연수원 진로정보센터, 사내 변호사협의회 Job-posting 등에 흩어져 있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정부 기업 로펌 등과 연계해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희망자는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 후 희망하는 곳에 입사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

변협 여성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기간제 변호사 채용 코너도 신설했다. 기간제 변호사란 변호사들이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휴직하는 기간이나, 장기 해외연수 혹은 유학 기간 중에 업무를 대신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연계·채용하는 시스템이다. 기간제 변호사 채용정보는 취업정보센터 첫 화면 중 '계약직 모집 바로가기'를 통해 볼 수 있다.

취업정보센터 관계자는 "대한변협 취업정보사이트는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변호사간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사업기획과(담당자 김다혜 02-2087-7773)로 문의.

서울회, 태국변호사회와의 교류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9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태국변호사회와 제3회 정기 교류회를 개최했다. 태국변호사

회는 삭 코상루앙 회장 등 20명의 변호사가 교류회에 참가했다.

9일 태국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2015년 동남아

시아국가연합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서울회 오영중 인권이사가 '2015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해, 태국변호사회 수와니 시리베치차편 부회장이 '아세안 현장과 아세안 변호사들'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태국변호사회 변호사들은 특히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이후 외국변호사의 국내 영업 현황과 외국법자문사법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회 방문단은 심포지엄 후에 태국 형사 법원과 검찰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의 법률제도과 법률문화 전반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회, 첫 법관평가제 시행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박희문)는 인천지법과 부천지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관평가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인천회는 지난 3월 박희문 회장과 부회장 2명, 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으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 소속 변호사 350여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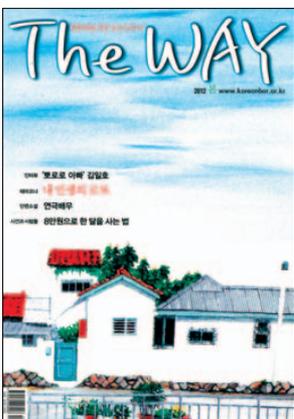
(www.incheonbar.or.kr)에서 설문조사 형식의 평가를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는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 등을 작성하게 돼 있다.

인천회는 올해 말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차가운' 법조인들이 쓰는 '따뜻한' 사람 이야기

대한변호사협회 휴먼 감성 문학지 The WAY [더 웨이] 봄호



인터뷰 '뽀로로 아빠' 김일호 대표를 만나다 / 윤배경

테마코너·내 인생의 로또 평범하게 열심히 살다보니 / 성중탁
어디서 본 듯하지만 하나뿐인 내 얼굴 / 이찬희

CARTOON 내 가슴의 멍들 같은 사건 / 이영욱

단편소설 연극배우 / 정진

사건과 사람들 8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법 / 염상익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02-2087-7751
구독료 : 1년 12,000원(날권 3,000원)



“물구나무선 정신으로는 오래 못 버텨”

제22회 변협 포럼서 신정근 교수 장자 강연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신정근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를 초청, ‘거꾸로 사는 삶에서 놓여나기’를 주제로 제22회 변협 포럼을 개최했다.

신정근 교수는 ‘동양철학의 유혹’ ‘마흔, 논어를 읽는 시간’ ‘동양고전이 뭐길래’ 등의 저술로 고전 붐을 일으킨 바 있는 우리시대 대표적 인문학자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자의 변신 이야기를 통해 외부의 유혹과 강요를 벗어나서 내적인 흐름에 따라 삶을 윤희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신 교수는 장자의 사상이 출현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부국강병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횡행하던 전국시대의 현실을 벗어나 자유로운 심리적, 철학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바로 장자의 사상”이라는 것. 이런 점에서 장자의 사상은 가혹한 시대의 현실로부터 벗어나 인간적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소망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자 사상의 핵심은 도현(倒懸)에서 현해(懸解)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도현이란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인데, 이 상태에

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현해는 ‘거꾸로 된 상태에서 풀려나기’라는 뜻이다.

신 교수는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세속적인 가치에 경도돼 있다는 걸 말한다”며 “그렇다고 모든 물질적 가치를 배척하라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수준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정근 교수는 손에 물건을 가장 오랫동안 힘들이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신 교수의 답은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는 것”이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더라도 주먹에 무엇을 쥐고 있다가는 언젠가 힘이 빠져 그것을 놓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 무엇을 억지로 하게 되면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사람의 몸이 물구나무 선 채로 오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정신 역시 거꾸로 선 채로는 계속 버틸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태풍으로 인한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참석, 인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23회 변협 포럼은 9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사 역할이 중요”

부산회, 16일 교직원 대상 강연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가 지난 16일 부산수영중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강연회를 개최했다. 부산회는 2002년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변호사 명예교사제에 관한 결연식을 체결하고 매년 부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강연회는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침, 대처방법 등에 교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서 소개했다.

부산회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학생뿐만 아니라 분장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학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부산회 임재인 변호사는 지난 3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처에관한법률을 소개하고 교사의 대처방안을 실시하는 사전관리 단계, 학교폭

력 발생 시 사건인지, 즉시조치, 처리방향 결정 등의 관리 단계, 2차 피해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사후관리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가해학생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결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상해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들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공감적으로 인식하고 공문화해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학생의 진정한 용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화해와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동 부산회 회장은 “교육청과 적극 연계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강연회는 8월 22일 연제고등학교, 29일 부산전자공고와 동백중학교에서 각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종기)는 회원들로부터 2012년 6월분 성금으로 595만원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200만원,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대구지부에 195만원을 직접 전달했고, 대구쪽방상담소에 200만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대구회는 1998년 5월부터 회원들 상대로 성금을 모금해 불우이웃을 도와왔으며, 올해 6월까지 총 7억8000여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밀어준 손을 잡고 벼랑 끝에 선 이가 안전한 세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준 한마디 위로가 이웃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기부하시면 억울함에 울고 있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 소중하게 바르게 쓰일 것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재단 알리기”를 통해 재단 사업 및 예산의 투명성을 매주 알려드립니다.(www.legalaid.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이며, 2010년부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대한 기부는 변호사법상의 변호사공익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부 방법: 일회 기부 및 정기 기부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www.legalaid.or.kr)의 기부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 계좌: 신한은행 140-007-031299
- 기부에 관한 문의는 전화: 02-3476-6511 팩스: 02-3476-6512
이메일: jung07@koreanbar.or.kr입니다.

“힘들수록 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겨 내야죠”

Interview

대한변협 부협회장 위 철 환 변호사



멀리서 보면 반짝거리서 예뻐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평범한 유리조각인 경우가 있다. 또 나는 아무렇지 않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실상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중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4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위철환 변호사는 후자의 경우 같다. 가까이 있어 잘 몰랐지만 보석같이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전체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

사실 소리 없이 일하는 이런 분들이 대접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9일 아침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온 위철환 변호사를 붙잡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경기도고등법원의 필요성이요? 인구가 1200만이에요. 전국 모든 도에 고등법원,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데 경기도만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서울로 다니기 불편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돼요. 경기도의 법조계뿐 아니라 단체인, 국회의원을 망라해 경기도고등법원 설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마라톤대회나 큰 행사가 있으면 나가서 서명운동하고 도민들 상대로 홍보활동도 하고 그래요. 이젠 지역 주민들이 저를 미스터 고등법원이라 불러요.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입법청원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셈이죠. 아, 대법원과 국회에 약 백만명분의 지지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위철환 변호사에게 경기도고등법원 유치에 대해 질문했더니 청산유수, 끝없이 이어진다. 대전-청주의 경우 서울과 수원보다 훨씬 가깝지만 대전고법과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다. 부산-창원, 광주-전주도 그렇다. 춘천은 고속도로로 서울과 1시간 거리지만 원외재판부가 있다. 서울은 하도 교통정체가 심해 수원은 차라리 대전을 가는 게 빠른 지경이

다. 고법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사람들은 항소를 하고 싶어도 포기하게 된다.

춘천은 원외재판부가 생기자 몇 달 만에 항소가 두배 가까이 폭증했다. 사람들이 그만큼 포기했었다는 반증이다. 경기남부의 경우만 해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약 30%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나뉘는데 우선 남부권역에 수원 고등법원 설치와 북부권역인 의정부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바라고 있다. 남부권역의 인구만 해도 약 800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6월 말 김진표 의원 등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니 위 부협회장의 숙원이 이뤄지지 않을까.

“도대체 왜 수원에서 개업을 하셨나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 동기인 친구가 권해서였어요. 그 친구는 수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데 수원에서 일하자고 권했어요. 한 건물에서 나란히 개업해 서로 도우며 일해 왔는데 그게 벌써 24년째네요.”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다. 사람을 믿고 끝까지 간다. 삼 년째 부협회장으로 일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한결같다.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사실 법조인에게 힘들었던 경험 이래 봐야 고시합격까지의 과정 아니던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드러난다고들 하는데 대개의 고시합격기는 어떤 사람인가를 느끼게 한다. 똑같은 고시합격기가 없는 이유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건 ‘공부가 힘들었어요’ 수준이 아니었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지방의 명문 고교에 시험을 쳤어요. 제가 비평준화 마지막 세대거든요. 고등학교에 떨어지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4남1녀 중의 장남으로 농사짓는 부모님께 저만 뒷바라지해주시길 바랄 수도 없고 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생활실험을 한 셈이죠. 신문 배달, 구두닦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지금은 담담히 그 시절을 떠올리지만 열일 굶이 마주 선 세상은 얼마나 차가웠겠는가.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다. 골목길을 걸을 때면 슬레이트 지붕 위로 널어놓은 누룽지를 주워 먹었다. 늘 배가 고팠고 겨울이면 손발이 얼어 터졌다. 자존심은 하늘 높은 줄 몰랐는데 현실은 한없이 낮기만 했다.

“또래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걸 보니 그

렇게 부럽더군요. 중졸로는 제대로 사회에 진입할 수 없겠다는 절망감도 들고, 그래서 중동고 야간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신문배달하던 친구들이 상고, 공고 가는데 전 인문계를 고집했어요. ‘길게 보자’ 생각한 거죠. 2년 동안 일만 하다 고교에 진학하니 힘들더군요. 두살 어린 친구들과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다 보니 처음엔 많이 해마다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교를 졸업하니 탈락 군대 영장이 나왔다. 선생님 한 분이 군대를 가기 보다는 서울고대에 입학해 학군단에 들어가면 복무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의 운은 그때부터 풀렸나 보다. 서울고대에 합격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한 몸으로도 신체검사를 통과해 무사히 RNTC무관후보생이 되었다. 사실 중동고가 당시 좀 거친 분위기였는데 야간은 더했을 터. 서울고대에 들어가 보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특히 명문고 출신에 수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위축감도 들었지만 금세 극복했다. 반골기질로 군사독재 시절을 무사히 넘기지 못해 군법회의에 회부될 위험도 몇 번 넘겼다. 당시 교육대는 서울대와 더불어 국립대학으로 등록금이 적었다. 더군다나 2년제였다.

졸업 후 미아리고개 넘어 청덕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당시 덕수상고를 나와 성대법대 야간편입생으로서 사시에 수석 합격한 조재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접했다. 은행원이던 조 변호사의 신화 같은 이야기에 그가 다닌 성균관대 야간에 편입지원했다. 청덕국민학교 다음에 간 안암국민학교도 보문동이라 주경야독으로 야간대학 다니기 좋

중학교 졸업 후 혼자 상경, 구두닦이에 신문배달까지 안 해본 게 없어 변리사소송대리권 부여 등 직역 위협하는 시도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 경기도고등법원 유치 위해 뛰어, 능장국회 대처 변협소송단 단장 맡기도

았다. 대학졸업 후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공부에 매진, 1년 만에 1차에, 그 다음 해에 2차에 합격했다. 1987년 1월 고시계에 ‘무작정 상경 13년의 결실’이라는 제목의 합격기를 쓰기도 했다. 연수원 수료 당시 로펌이 지금보다 지원이 적었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는 유명한 변호사 밑에서 2년, 3년씩 수련을 쌓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용기백배한 청년, 위철환은 단독 개업을 택했다.

“사실 국민학교 교사를 6년가량 했으니 사회경험도 있다고 자신했던 거죠. 사실 제일 순진한 게 국민학교 선생인데 말이죠. 밑바닥 생활을 경험해봤고 하고자 하는 방향만 옳다면 의지의 문제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나이도 있었고, 순진했던 거죠. 참 어렵습니다. 요새 어렵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은 다 어렵워요. 의뢰인들이 보자마자 판사하다 나왔느냐, 검사하다 나왔느냐고 물을 땀 난감해요. 그때는 경제전반이 어렵고 위축된 시기라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변호사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악습이나 나쁜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정의감이나 도덕적 가치를 지키려 들면 사무실 유지도 못하겠다 싶기도 했다. 서울과 또 다르게 지방에서 용인하는 악습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악습을 보는 잣대가 엄격해지고 깨끗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십여년 전, 수원 법조비리가 터졌을 때 수십명에 달하는 수원지역 변호사가 징계, 과태료,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그 당시에 좀 한다 하는 변호사님들은 다 연루됐었어요. 나는 변호사 축에도 못 낀다고 우스갯소리하고 그랬죠. 제가 ‘한 점 티끌 없이 깨끗하다’고는 못해도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 게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 지방회장에도 당선된 것 같아요.”

그가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된 것도 한편의 드라마다. 부장판사 출신에 제1부회장을 4년 한 분이 이미 기반을 다져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국회의원 출마경험이 있는 판사출신까지 출마해 3파전이 됐다. 화려한 경력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때까지도 변호사회는 명망가들이 순차적으로 회장을 맡는 분위기였다.

“사실 제가 할 자리가 아니었죠. 그러나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보자는 각오로 덤벼섰습니다. 경기중앙회는 부회장들 두 명과 러닝메

이트로 입후보해야 하는데 등록 직전에 겨우 팀을 짤 정도였어요. 그러나 제겐 자발적 응원자들이 많았어요. 결선투표제가 있었는데 1차에서 제가 압승했습니다. 두 분을 다 합쳐도 제 절반 조금 넘는 정도였죠. 변화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너무 강성으로 과격한 정책을 쏟아낼 거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전혀요, 저는 온건하고 점진적인, 합리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호사 사회는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다 회원이고 융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 안에서 단결하도록 만드는 회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반목하던 사람들도 위 변호사를 통하면 대화가 됐다. 일종의 중재자, 창구의 역할을 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 받아들여 제3의 대안으로 수렴된다. 변호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위 변호사의 진정이 통했는지 2년 회무를 끝내니 ‘협회장 직선제’와 ‘경기고등법원 유치’라는 과업을 다 이행하지 못했으니 더 해서 완성하라며 무투표지기로 회장직이 연장됐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직선제 통과의 뒷얘기를 들었다.

“사실 변협 부협회장의 지방변호사회 회장 몫 두 자리는 13개 지방회에서 번갈아 맡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직선제 쟁취의 염원으로 지방회장들이 제가 부협회장을 맡는 게 좋겠다 하셨죠. 그러니 제 어깨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극심한 반대에 대한변협 원로들까지 나서서 다음으로 미루라고 하실 정도였고 변협 이사회 분위기도 ‘우리가 왜 이 짐을 져야 하나’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민주주의의 대원

칙, 보편적 정의니까 실현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지방회원이 이등회원 취급당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고 수는 열세여도 가능하다고 확신했어요.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대한변협 협회장 직선제의 의미는 지방회 원도 한 표를 행사하게 되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회원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도 달라진다. 1만3000여 회원의 손으로 뽑힌 직선제 회장은 법조삼륜의 수장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바른 소리를 하고 불의와 싸워나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변협의 위상이 달라지면 변호사의 위상도 달라지는 것.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위철환 변호사는 최근 국회개원이 늦어져 자 변협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국회소송단장’을 맡기도 했다.

위 변호사는 “국민이 극심한 가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마당에 국회가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대한변협은 정의와 인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목소리를 낸 것인데 국민의 호응이 무척 커서 놀랐습니다”고 말했다.

변협의 성명과 일련의 조치발표 이후 곧바로 국회개원의 성과를 낳았고 모처럼 대한변협이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쓴소리를 해야 할 때는 바로바로 할 줄 아는 변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니 국회 개원식에도 예년과 다르게 변협 협회장을 초대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를 검토하

고 있고 변호사법 개정안에 변호사중개제도가 들어가 있는 등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업계의 현실과 법률서비스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얘기들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회무에 무관심하고 자기 일만 하는 것 같은 분들도 다가가 얘기해보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회와 자기가 맞지 않는다, 나와 관련 없다는 생각으로 무관심하셨던 거죠. 이런 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봐요. 사실 법조인이 소극적인 분은 드물어요. 바쁘고 일에 치여 그런 거지. ‘변호사회가 발전해야 내 일이 잘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이 실현되게 해야죠.”

위 변호사는 현재의 어려운 법조시장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었다.

“먹고 살기 힘들수록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힘들수록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돌파구가 보일 거예요. 사실 20년 넘게 한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로펌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에는 우리보다 더 힘든 처지,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많잖아요? 우수한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사건을 기다리는 시대는 갔고 여러 상황도 변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죠.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들의 소송수행담당자들이 인사철마다 바뀌니 법원도 힘들어해요. 이제는 전문가가 맡아야죠.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똬스다.”

/ 박신애 편집장

특별기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과연 존재이유가 있는가?



이상열 변호사

우리나라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도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다. 즉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상고하여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상으로는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실제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대법원의 판결태도를 바라보면서, 병어리 냉가슴 앓듯 허탈한 배만을 쓸어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현주소이다.

아니,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국민 중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대법원에 상고해 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쉽게 체험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한줄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두어줄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누구나 일정한 기간 내에 ‘2심 판결의 어떤 점에 대하여 불만이다,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유가 무엇이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어느 점이다’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2페이지 이

상에서 수십페이지에 이르도록 구구절절 기록하여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후 돌아온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판단을 받기 원하는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달랑 두어줄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그렇게 애타게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상고를 제기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이 심리불속행에 해당된다는 한두줄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허탈감 내지는 분노를 느끼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어찌보면 이는 대법원에 의하여 자행되는 사법정의의 말살이요, 임무해태이다.

물론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두 조항들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의 70%가 제대로 된 심리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이라는 사유로 배척되고 있다. 즉 3건 중 2건은 심리불속행에 해당되어 기각한다는 한줄의 판결문을 받게 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상고를 하였는데, 정작 대법원은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도 아니하고

한줄로 끝내버리고 있다.

위 특례법은 남상고를 방지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지만, 대법원은 위 특례법을 방패삼아 제정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 특례법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이 아니라면서 합헌론으로 내세우는 근거인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데에 역량을 모으기 위하여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의 70%가 제대로 심리를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이라는 한줄로 상고사건을 덮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위와 같은 합헌론이라는 그럴듯한 한마디의 말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의 주된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국민에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상고심의 판단을 받기 원하는 국민에게 판단을 받기하는 대법원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대법원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 앞에 존재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등등의 구태의연한 변명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할 수 없다. 과연 대법원의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 부족 타령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국민이 자신의 기본임무를 방기하는 대법원의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lsy9811@naver.com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판단을 받기 원하는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달랑 두어줄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즐거운 편지



김치중 변호사

사실 분쟁이 없더라도 어떤 사실을 처음 그대로 기억하고 있기는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분쟁 중에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하다보면 설득력을 높이려는 순수한(?)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은 좀 생략하고, 큰 그림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범위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에 작은 사실들을 추가하여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온갖 매체에 떠도는 감동적인 예화들도 따져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변호사까지 관여하여 재판에서 좀 유리하도록 능력을 발휘, 다듬는 작업을 하

재판을 하다보면 ‘아, 그래도 역시 판사는 텃씨워진 화장을 긁어내고 진실을 보는구나’ 하고 감탄할 때가 자주 있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입장이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좀 더 잘 가려낼 수 있고 전문가로서의 숙련된 기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하지만 그 작업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많은 경우 법원이 인정한 사실 역시 또 다른 스토리인 경우가 많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있다. 법원에서 또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는 공익, 논리의 일관성,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 등이 고려되지 않을까 짐작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진실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진실에서 조금은 동떨어진 사실관계밖에 못 밝히게 마련이니, 그런 경우라도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자’ 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논리와 제도를 발전시켜와서 오늘의 사법제도에 이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동안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배운 여러 가지 실제법상의 해석논리,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주장,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증거법 등은 모두 진실에 다가갈 수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한 유용한 도구들이 아니겠는가. 진실을 확보했다면 이런 복잡한 원칙들은 모두 필요 없었을 테니까.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이 일을 맡은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법정에 스토리만 떠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할 일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만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주장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과 겸손함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사건을 대하고 사건 당사자나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렇게 해서 한 걸음이라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는 행동을 단 한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kcjlmh@barunlaw.com

진실은 없고 스토리뿐이지만

법정이나 재판에 관해 말할 때면 늘 “진실을 밝히고”라는 언급이 끼어들지만 사실 알고 보면 원래 법정에는 진실은 없고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실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이미 체념해서 우려하는 것조차 그만둔 상태가 아닐까?

요즘 스토리란 용어는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 광고에서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있어야 유리하다’는 식으로 대학 입학시험 광고지에도 등장할 정도로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아니다. 의도했던 아니든 유리한 방향으로 윤색되고 편집된, 그래서 진실과는 상당히 멀어졌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좀 뽀얀 그런 주장을 말한다.

게 되면 최초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마련이다. 사진은 잔뜩 ‘보습’을 하여 이력서에 붙여 내더라도 면접날 실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스토리로 변해버린 사실관계의 첫 모습은 누구도 다시 대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저 각자의 스토리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거짓말을 비난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스토리는 자꾸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탄하는 ‘거짓으로 가득찬 법정’ ‘진실은 없고 스토리뿐인 법정’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흔쾌히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뭔가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찝찝한 기분을 갖게 만든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하는 그런 기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늘 판결이 비판받는 이유가 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우려는 재판이라는 시스템이나 법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그처럼 크게 우려하거나 비판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대부분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진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내심 우리 모두 인정하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재판이

생각하는 숲



박수연 변호사

출산 휴가가 끝나고 복직을 하게 되자, 부산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러 집으로 오셨다. 졸지에 ‘기러기 할아버지’ 신세가 된 시아버지를 남겨두고 어머니는 홀로 아들 내외와 동거를 시작하신 것이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인자한 성품의 어머니에게 잔잔쟁이를 맡기게 된 것은 참 행운이었다. 덤으로 하나 더. 어머니 덕분에 요즘 나는 사투리의 바다에서 휘휘 유평하는 기분으로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맛보고 있다.

어느 날, 할머니와 눈을 맞추고 방긋 웃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요 쫄쫄한 아보래이. 꼭 큰 아~ 맹쿠로 실실 쫄쫄대이~.”

(이 작은 아기 보라. 꼭 큰아이같이 웃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깜짝 놀랐다. ‘쫄쫄대이?’ ‘쫄개는 것’은 험상궂게 생긴 강패가 기분이 짜질 때 또는 양아치가 담배를 꼬나 물고 상대를 비웃을 때나 하는 것 아닌가? 생후 3개월, 솜털 뽀송뽀송한 아기가 쫄쫄대이니?

“어머니, 부산에서는 아기한테도 쫄쫄대고 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는 며느리에게, “웃는 거야 쫄개는 거 아이가?” 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하신 어머니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시며 또 말씀하신다.

“울애기, 빠빠 묵고 네네 하그래이~”

사투리의 향연

역시 처음 듣는 말. 눈치로 보아 ‘맘마’를 먹고 ‘코~ 자라’는 뜻 같았다. 그동안 남편을 비롯해서 많은 부산 사람들을 봐왔지만 육아 상황에서의 부산현지어는 처음이라 외국어처럼 생소했다.

그러던 중, 광주에 사시는 친정어머니가 외손주도 볼 겸 며칠 집에 다녀가셨다. 고급 경상도 사투리를 맛깔스럽게 구사하시는 시어머니와 정통 전라도 사투리의 달인인 친정어머니는 간만에 사돈을 만나 왁자지껄 서로의 안부를 물으셨다.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가 한바탕 어우러진 순간, 그것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사투리의 향연’이었다.

“사둔님, 퍼떡 들오이소, 역수로 덤지예?” (사둔, 어서 들어오세요. 너무 덤지요?)

“오메, 잘 기셨소잉? 고상 징히 허셨지라?” (어머, 잘 기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아이고 어데예, 아 어마이가 마이 대지요.” (아니예요, 아기 엄마가 많이 힘들지요.)

사투리는 지역이 달라도 서로 다 통하는 것일까? 사투리의 달인들인 두 어머니는 전혀 다른 언어로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고 계셨다.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농밀한 어휘들이 팔딱거렸다. 마치 누가 더 구성지게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는지 시합을 벌이는 듯했다.

“솔지 허게 솔 쫄까 갖고 왔는디, 맛날랑가

물겅소” (부추김치 담그려고 부추 좀 가지고 왔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정구지예? 무겁꼬로 와예? 아이고 무시라~.”

(부추요? 무겁게 왜 들고 오셨어요? 이를 어찌면 좋아~.)

“곰메, 더우에는 솔이 질~이여요. 많응께 오지게 멩글겅소.”

(글쎄, 더위에는 부추가 제일~이예요. 많으니까 충분히 만들겠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솔’과 ‘정구지’로 맛있는 부추김치를 만들어 먹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니들의 구수한 입담은 끊이지 않았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아직도 내가 모르는 우리말이 얼마나 많은지 놀랍기만 했다.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면 오해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섬세한 표현들이었다.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일까? 예전엔 깔끔하고 세련된 서울말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사투리의 그 정겨운 투박함이 참 좋다. 재판정에서 판사님이 질편한 남도 사투리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까칠한 도시생활에 익숙해져 갈수록, 촌스럽게만 생각되던 어릴 적 고향 사투리가 소중한 게 느껴진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너무 정색한 표정으로 표출언만 푹~푹 사용하지 않으리라. sypark@seoulbar.or.kr

“사둔님, 퍼떡 들오이소, 역수로 덤지예?”
 “오메, 잘 기셨소잉? 고상 징히 허셨지라?”
 “아이고 어데예, 아 어마이가 마이 대지요.”
 사투리는 지역이 달라도 서로 다 통하는 것일까?

클래식과 친구하기



하죽봉 변호사

않아서 어떤 분은 골동품이 아니라 신상품보다 낫다고까지 하므로 초입에서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 음악은 물론 악기의 반주가 붙지만 대부분이 성악곡입니다. 중세 이전의 성악곡은 구전민요가 아닌 한 거의 미사곡입니다. 미사곡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미사에 사용되는 음악 즉 신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이해하면 큰 망발은 아닐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왜 미사곡을 듣느냐? 앞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도 이 곡을 부르는지 아직 그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중세의 미사곡은 21세기 들어 유행하고 있는 고음악연주(또는 정격연주)의 대상이 되어서 음반으로 접할 기회가 많아졌으므로 시간이 나면 인내력의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아마추어의 눈에서 음악의 발달과정을 둘러볼 기회입니다. 처음 듣고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상을 찾듯이, 뿌리가 어디인지 훑어오듯이 다시 한번 고음악으로 돌아오리라고 단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레퀴엠은 현대에 와서도 브리튼이 전쟁레퀴엠으로 그 존재가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었지요. 엄밀히 말해 미사곡은 아니지만 비슷한 범주로서 모차르트의 모테트 중 “아베 베를 코르푸스”(아 거룩하게도 우리 인간의 몸을 타고 태어나시도다)나 “춤추고 기뻐하라 행복한 녀이여”는 그 길이에 비해 주는 감동은 너무 큼니다.

종교와 관계없는 음악도 없을 리가 없습니 다. 구전 민요도 많지만 중세의 기사도, 설화에 나오는 음유시인에 의한 세속음악도 남아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굳이 일부러 찾아서 들어볼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 중 하나는 수도자들이 세속적인 내용의 시를 짓고 여기에 곡을 붙인 카르미나 부라나입니다. 20세기 초반의 독일 작곡가 칼 오르프가 중세의 시를 현대적 수법으로 작곡하여 일약 명곡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칸타타 형식인데 영화 등에도 자주 사용되어 귀에 익숙합니다. 제 1곡은 “운명의 여신 이여 왜 우리를 이렇게 번롱하시나이까”로 시작하는 데 어떻습니까?

클래식 음악이 동서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가 보편적으로 즐기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는 언제나 스스로 물어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아니하나 어쩌다 뿌리에 해당하는 곡들을 들 때 받는 이 감동과 위안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jbha777@yahoo.co.kr

클래식 음악의 뿌리

미사곡의 처음으로는 보통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를 들고 있습니다. 5~7세기의 구전을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집대성하여 그 이름을 얻었는데 서구에서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새로운 레코드나 나올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좋은 레코드가 많이 나와 있으므로 그중 하나를 골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쿠스틱 효과가 좋은 암굴 성당이나 수도원에서 무반주로 연주한 것을 추천하는데 그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 심연에서 솟구치듯 오릅니다. 이 곡을 들으면 TV에서 본 아토스 성산의 성당과 수도원을 연상시키는데 그리스 정교인 그곳에서

성악곡의 전통은 끊임없이 내려와서 바하는 수난곡과 칸타타(교성곡)를,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헨델은 오라토리오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다시 그 뒤를 이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루크너 등은 본래의 미사곡으로 돌아가 많은 명작을 남기고 있지요. 라틴어 가사만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곡만을 비교하여 들어보기 좋습니다. 인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차르트나 슈베르트와 달리 장중함과 고양감을 주는 베토벤의 작풍은 장엄 미사곡에서도 그대로임을 느끼실 것입니다.

미사곡의 대표인 망자를 위한 미사곡 즉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1685년에 태어나 1750년 사망했으므로 기껏 250여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흐 이후의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우리와 2세기의 차이밖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악보로 남아 있는 중세의 음악은 6~7세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중세음악 또는 바로크 이전 음악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이 종교음악, 즉 신에의 찬양을 기리는 미사곡입니다. 이런 음악들이 지금도 연주되고 있고 음반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그 높은 음악성에 있을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분들에게 중세음악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음악의 뿌리를 알 필요도 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의 음악에 비하여 그 음악성이 조금도 모자라지

지방네트워크 부산회



김외숙 변호사

부산 신사의 품격

였다. 모름지기 누군가를 신사라고 할 때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품격을 보는 것이다. 소위 꽃중년 신드롬에서는 신사의 품격을 느낄 수 없다. 부산에는 진짜 신사들이 아주 많은데 그분들 전부를 소개하기에는 안타깝게도 지면이 너무 좁다. 하지만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부산 법조계의 멋진 신사들을 소개하고 싶다.

신사 M: 인간에 대한 예의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에 와서 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M변호사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반, 부산·경남지역에서 노동, 인권사건은 M변호사가 도맡고 있었다. 혼자 잘먹고 잘살기 위해 고시공부를 한 건 아니라고, 나름대로 정의감에 충만해 있던 예비 법조인들에게 그는 훌륭한 역할 모델로 이름나 있었다. 노동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불쑥 찾아간 나를, 그는 흔쾌히 맞아 주었다. 체력이 약해 비실거리거나 앓을지, 출산이나 육아로 업무에 지장을 주진 않을지 등등 여자라서 일시키기에 불편할까 따지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때까지 사회경험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던 나는 M변호사의 그런 태도가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변호사를 시작하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는 사람에 대해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서서히 알아갔다. 나만 해도 변호사로서 조금 께가 나기 시작하자 사람을 가려 판단하고, 지레 선입견으로 말을 자르고, 유불리를 따졌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변호사의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라 여겼다.

하지만 M변호사는 달랐다. 내가 보기엔 반복되는 쓸데없는 이야기, 순전히 억지뿐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당사자에게도 그는 그렇게밖에 못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을 줄 알았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에게서도 외면당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절망에 빠져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그를 찾았다. 돈 받고 남의 일 해주는 변호사지만 그렇게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 보았다.

수년 전의 일이다. 우리 사무실에는 아주 질기고 질긴 사건이 하나 있었다. 사건이 그렇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사건 본래의 성격이 그렇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독특하거나.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었고 당연히 M변호사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이었다.

그녀는 도무지 청구취지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을 주문했고, 한 가지를 설득시키고 나면 다른 요구사항을 들고 나오는 식이었다. 그녀의 주치의들과 법원 근처의 웬만한 법률사무소들도 이미 두 손을 든 상태였다. 그녀는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왔고, 불쑥 나타나 오랜 면담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고도 돌아서면 다시 할 말이 생각나는지 전화로 M변호사와의 통화를 요구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성화에 전화를 바꿔주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M변호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M변호사는 그 흔한 “법정 갔다고 그래”라는 핑계도 대지 않았다. 가끔 얼굴을 찌푸리며 담배를 찾을지언정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호소를 끈덕지게 듣고 있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스러운 상황에서조차 그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다.

결국에는 M변호사의 한결같은 태도가 세상에 모든 원통한 일을 혼자 당한 듯이 응어리진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실 식구들까지도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신사의 품격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데 있고 그 예의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나오는 것임을 오늘도 되새긴다.

busandike@yahoo.co.kr

우연히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돌리던 채널을 아는 얼굴이 나오는 곳에 잠시 멈추었다니 요즘 한창 인기가 좋다는 ‘신사의 품격’이었다.

중간에 잠깐 한번 본 것으로 그 드라마를 마치 잘 아는 양 나대고 싶진 않다. 하지만 드라마에 대한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해야겠다. 거기에는 나이 마흔을 넘긴, 매끄럽고 세련된 남자 4명이 활보하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수려한 외모, 폼나는 직업, 멋진 차림새는 남자의 로망을 망라한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어디 인생이 그렇게 매끈하고 화려하기만 한가?’ 이죽거렸다. 현실이 그게 아닌데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것에 그만 심사가 꼬였던 것이다.

얼마 안 가 주인공들이 스스로를 신사가 되지 못한 소년이라 부르며 맥주잔을 맞부딪치는 장면이 있었다. ‘그래, 아무나 신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긴 하는구나.’ 그 제야 불편했던 심기가 풀리며 드라마가 보

주요판결

저작권사용료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파기환송

가수 A는 저작물신탁관리업자 B에게 자신의 음악저작물관리를 맡겼다. 가수 A는 저작물신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저작물신탁관리업자 B는 방송사 등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신탁계약이 해지된 음악저작물은 더 이상 자신이 관리하지 않게 되었음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송사 등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은 가수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 이 경우 저작물신탁관리업자 B는 A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상의 해지권 제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적극)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상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이른바 '자익신탁'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위탁자가 보유하는 해지의 자유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물신탁관리업체인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한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법정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피고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법상 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되,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1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3조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귀속권리자는 신탁수익권의 형태로 신탁재산 등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뿐이다.

나아가, 구 신탁법에는 신탁종료 시의 수탁자의 청산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거나 해당 신탁의 취지 등에 의하여 달리 볼 수 없는 한 수탁자는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쌍무계약에 관하여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귀속권리자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신탁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저작물신탁관리업체인 B는 방송사 등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신탁계약이 해지된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B의 관리저작물이 아니게 되었음을 통보할 주의의무는 없고, 방송사 등 이용자들이 위탁자인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A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

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A에게는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위탁자인 A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파기환송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을까?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

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10814 판결【배당이의】

어음양수인이 지급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 어음금채무가 시효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양수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 지급보증채무자는 어음양수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금채무가 시효소멸하면 그 지급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참조), 어음금채무가 어음양수인이 지급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시

효는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집합건물법과 개정 주택법은 입법목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의무자,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 또는 승인했다라도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효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서 어음양수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보증채무자는 어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하자보수금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상고기각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과 같은 날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근거 규정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제1조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1984. 4. 10.) 제6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개정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단서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개정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주택법 제46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하 '사용검사일'이라고만 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밖에 개정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정리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특별연수



오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전문분야 특별 연수로 '헌법과 헌법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연수 중에서 '헌법소송의 소송요건'을 주제로 강의한 오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강의를 간추려 소개한다. 오 연구관의 강의 중 심판대상의 확정과 청구기간만을 발췌해 줄인 것이다.

【편집자註】

1. 문제의 소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관한 해석론 외에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심판대상인 법령의 확정 문제이다.

법령은 제정된 이후 끊임없이 개정된다. 법령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부처명이나 조사 등 형식적인 문구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법령의 개정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처럼 내용의 변경 없이 형식적인 문구만 바뀌는 경우에도 법령소원의 심판대상 확정시 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문제된다(이하 내용의 변경 없이 형식적인 문구만 바뀌는 경우에도 심판대상 확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형식설'이라 칭한다).

만약 형식적 개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이 시행될 때 마다 청구인에 대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새롭게 기산될 여지가 있을 것이고, 법령의 실질적 의미 변경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면(이하 내용의 변경이 있어야만 심판대상 확정에 반영하는 견해를 '실질설'이라 칭한다) 해당 법령이 시행된 것은 비교적 오래전 이므로, 대체로 그 법령의 시행 후 그 사유에 해당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은 날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잡게 된다.

2. 형식설과 실질설의 차이점

예컨대,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시기에 관하여 만 나이가 아니라 연(年) 나이로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만 나이보다 빨리 군대에 징집되게 된 청구인이 2009년 7월 20일 위 법률조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된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54호로 일부 개정된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위 두 법률 조항의 차이는 밑줄 친 조사 정도이다. 형식설에 의하면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개정된 것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54호로 일부 개정된 병역법 제2조 제2항으로 확정하게 된다. 만약 위 조항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면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아 2009년 7월 20일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했다고 볼 여지가 높다.

반면 실질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는

후 다시 형식적인 개정이 있었다면 그 법령 전까지(만), 실질설의 경우 1983년 12월 31일 이후의 병역법 제2조 제2항 모두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장애에만 미치는 일반 법령과 달리 소급효를 가지는 형벌 조항의 경우는 어느 견해를 취하는 지에 따라 재심(再審)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권리구제의 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게 된다.

3. 형식설을 취할 것인가 실질설을 취할 것인가

(1) 실질설의 타당성

형식설은 심판대상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헌법 재판의 효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힘으로서 헌법재판의 규범통제로서의 역할을 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본권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지만 당해 법령이 위헌으로 선고되면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질서를 보호·유지하는 객관적 규범통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

수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제도가 가지는 규범통제로서의 기능에 더 부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2) 실질적인 개정의 기준

다만, 실질설을 취할 경우 어떤 법령의 개정여부와 그 개정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예컨대, 청구인은 A법 제1조 제2항 제1호를 다투는데, 이와 연관되어 있는 같은 항 제2호가 개정된 경우, 혹은 청구인은 B법 제2조 제2항 본문을 다투는데, 같은 항의 단서가 개정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보아 심판대상을 달리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이 실제 다투고자 하는 청구취지에 초점을 맞추고,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현실적으로 파악한다면 문제되는 법령조항의 확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 나이로 규정한 조항을 다투는 경우에는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동일성 여부를 살펴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될 것이고,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다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외교습이 허용되는 규정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의 동일성 여부를 살펴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실질설을 취하는 한 심판대상 확정의 기준이 항상 일의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의 법령조항을 적용받았던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기본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이 실질설의 장점이라고 할 것이다.

4. 소 결

청구기간이라는 소송요건을 법령 헌법소원심판에 적용하면서도 형식설을 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새롭게 청구기간이 기산되므로 청구기간이 도모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설은 심판대상의 폭을 협소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의 확정에 있어서는 실질설을 취하고, 청구기간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령 시행 후에 그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받은 날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구제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 규범통제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바뀌는 법령, 청구기간 기산점은 언제?

내용변경 있어야 개정으로 보는 실질설·형식설 대립

심판대상 확정은 실질설, 기산점은 구체적·현실적 침해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年) 나이로 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1983년 12월 31일에 전부 개정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실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된 병역법 제2조 제2항으로 확정하게 된다. 다만 청구인이 병역법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어 징집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심판대상을 어떤 법령으로 확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의 확정에는 청구기간 준수 여부의 중요한 선결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설과 실질설은 청구인이 적법요건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령을 위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의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게 된다.

형식설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이후의 법령만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어지는 반면(만약 이

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의 형식적인 개정 전후로 나누어 실질적으로 같은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법령 개정 단위마다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됨으로써 기본권 구제의 폭이 협소해진다.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령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부처 이름이나 타 법령명의 개정 혹은 조사 등의 변동으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구제받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형식설에 의해 해당 법령만을 심판대상으로 확정할 경우, 본안 심리 후 위헌 선언 전에 해당 법령조항이 또다시 형식적으로 개정되어 시행 중인 경우에는 구법이 되어 버린 심판대상 조항은 위헌이 되었지만 개정된 현행 법령은 계속 유효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법령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를 심판대상으로 확정하는 실질설을 취함으로써 국민의 구체적 기본권 구제의 폭을 넓힐

새 법률을 소개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2. 1. 일부개정 / 2012. 8. 2. 시행

-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 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였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7. 10. 일부개정 / 2012. 8. 2.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사유를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사유를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7. 전부개정 / 2012. 8. 18. 시행

-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의 정의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최근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이른바 신방문판매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요건 중 '소비자' 및 '소매이익' 부분을 삭제하여 유사 다단계판매업체들을 다단계판매업체로 규율하였다.

-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정의하고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 방문판매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률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변종 영업형태를 금지하기 위하여 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밝히지 않고 거짓 명목을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등 사행적 확장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 유형들을 금지행위에 추가하였다.

-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7. 10. 전부개정 / 2012. 8. 18. 시행

-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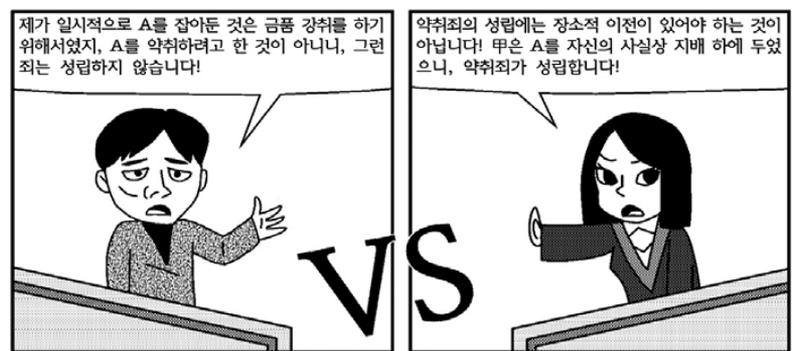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상한을 현행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등록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미성년자약취죄에서 약취의 의미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판례 쟁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장소적 이전 없이,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의 장소적 중심인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와 부모의 보호관계가 제한 혹은 박탈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한다.

해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장소선택의 자유와 보호감독자의 보호감독권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유인 등의 행위외에 부모의 보호관계로 이탈시키는 행위와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총평

역시 대한민국의 아줌마는 용감하다!

글 :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원장 / 그림 : 이영욱 변호사

출처 : 만화 형법 판례 “형법각론”【법률저널】



양삼승 변호사의 法街散策 거인(巨人)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요즘 사법부에 관한 언론보도 중에 몇 가지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7월초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와 금융관련 및 사학관련 범죄 등에 적극적인 구속과 함께 엄벌을 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선제적·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5월에는 판사들이 참여한 학교폭력심포지엄도 열렸고 앞으로는 음주감경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근자에는 장애인을 성폭력한 피고인에 대하여 구형보다 훨씬 중한 1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역시 선거범죄 및 사학재단 사건에서도 사회적 비난여론을 고려하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되었다.

반면 이러한 사건들과 방향은 다르지만, 수년 전부터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에게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최근 소위 학원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도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판사들의 움직임은 보면서, 국민정서와의 괴리를 극복하고 국민에 다가가는 사

법부를 이루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구심이 드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첫째는, 사법부의 '잘못된' 모습이다. 즉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재판사항에 관하여 어

떠한 결의를 하는 것은 사법부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고, 더욱이 '선제적·선도적' 같은 용어는 법관이 쓸 단어가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가·사회적 아젠다 설정기능을 하는 정치권이나 언론계 또는 '법집행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법선언기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무엇이 정의인지를 선언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법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즉, 형사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일시적인 흥분과 복수감정에 사로잡힌 여론에 휩쓸

려 엄벌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다. 여론은 자칫 유행과 같이 감정적이고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마저도 여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이 소위 양형기준표에의 종속 내지는 맹종의 심각성이다. 즉, 양형기준표는 사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권고적 사항'으로 타협하여 법원조직법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권고적 효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마치 강제력이 있는 것같이 기계적 대입으로 형량을 정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형기준표의 도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

는 그 비율이 95%에 달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그 기준준수율이 60% 미만이다. 적절한 재량권 행사가 아쉬운 대목이다.

셋째는, 사법부의 근본적이지 못하고 '미봉적인' 모습이다. 즉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한 구제에 관련하여, 그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두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는, 왜 과거에는 동일한 증거 하에서 유죄판결을 하였는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거 그와 같은 잘못된 판결을 하게끔 만든 원초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조치는 내려져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든 몇 가지 사례들은 모두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법관의 집단결의'나, '엄벌주의'나, '재심무죄판결'이나, 더욱이 '과거의 유죄판결'까지도 모두 '당시의 여론에 부응'해 주었다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다. 뒤집어 말하면, 언젠가 여론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에 맞추어 판결방향이 또다시 바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거센 여론의 쓰나미 속에서도 사법부는 곳곳이 정의를 선언하는 기개를 가짐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사법부에 거인(巨人)이, 거목(巨木)이 없어지고, 서류에 영합하여 무사함을 추구하는 '사법부의 가벼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ssyang@hwawoo.com

사법부의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여, 양형에 대한 법관의 깊은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만에 하나라도, '피고인 한 사람만 손해를 보면 판사, 검사, 국민여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양형 기준설정의 주된 목적은 양형 편차를 시정하자는 것이지,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외면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점에 관한 통계수치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즉, 양형 기준이 도입된 이후의 적용실태 분석 결과, '양형기준준수율'이 90%안팎이고 특히 중한 범죄사건인 형사합의사건에서

로스쿨 통신



이창민

실습과정의 중요성

어린 학창시절 방향식을 마치고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왔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마 짜여진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 조종되는 듯한 일상을 보내지 않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해 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방학에 대한 의미는 많이 달라졌다. 입시가 다가오면서, 부족한 공부를 만회하기 위해서 학기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 여행이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로스쿨에서의 방학은 참으로 소중한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이다. 열심히 채찍질해왔던 스스로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얼마되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고,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개인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말고사가 눈앞에 다가오면 조금씩 방학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크게 실습과 법학과목 학습에 대한 계획으로 나뉜다. 보통 실습과정을 이수해야만 졸업요건을 이수할 수 있고, 3학년 방학 때는 취업과 연계된 실습이 아니라면 시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므로, 보통 2학년 여름방학 때 요건을 채워놓으려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또한, 학부시절 웬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방학때 남들과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서 다음학기 때는

차별적인 것 같다.

갑자기 새로 생겨난 제도에 따른 실습으로 인해 여건이 불비하겠지만, 후배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수반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로스쿨에서의 3년이 너무 짧다는 걸 잘 안다. 그 3년 안에 방학을 포함하더라도 그렇다. 그 기간 안에 졸업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학기 중의 부족한 공부를 채워나가야 한다. 그 기간에 자유를 누린다는 생각같은 건 버린 지 오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짧은 3년이란 시간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과 실습과정이 실습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실습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부를 하면서 정신적·체력적으로 힘들어하던 어떤 학생이 실습을 다녀온 후 성적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직접 해보게 되니 재미있고 책임감도 생기면서 공부가 재미있어지니 공부 가 힘들지 않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 실습을 통해 미래를 위한 자신의 비전을 보고, 자신의 학습동기를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소중한 실습 과정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이 자리잡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생
cptleecm@gmail.com

“갑자기 새로 생겨난 실습제도로 여건이 불비하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